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18
----------	-------

발의연월일 : 2026. 2. 3.

발 의 자 : 한병도 · 강득구 · 강준현
고민정 · 곽상언 · 권칠승
권향엽 · 김교홍 · 김기표
김남근 · 김남희 · 김동아
김문수 · 김민석 · 김병주
김상욱 · 김성환 · 김성희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김용민 · 김우영 · 김원이
김 윤 · 김윤덕 · 김정호
김주영 · 김준혁 · 김태년
김태선 · 김한규 · 김 현
김현정 · 남인순 · 노종면
맹성규 · 모경중 · 문금주
문대립 · 문정복 · 문진석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박수현 · 박용갑 · 박 정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박지혜 · 박찬대 · 박해철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백승아 · 백혜련 · 복기왕
부승찬 · 서미화 · 서삼석
서영교 · 서영석 · 소병훈
손명수 · 송기현 · 송옥주
송재봉 · 신정훈 · 안규백
안도걸 · 안태준 · 안호영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위성곤 · 유동수 · 윤건영
윤종균 · 윤준병 · 윤호중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현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현
이주희 · 이학영 · 이해식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전진숙 · 전현희 · 정동영
정성호 · 정을호 · 정일영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정태호 · 조계원 · 조승래
조인철 · 조정식 · 주철현
진선미 · 진성준 · 차지호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최민희 · 추미애 · 한민수
한정애 · 한준호 · 허성무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황명선 · 황정아 · 황희
의원(162인)

제안이유

저출산 · 고령화, 청년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불균형은 지방소멸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시와 도는 분리된 행정구역으로 인해 교통 · 산업 등의 계획을 단절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분절된 행정서비스로 인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광역시와 도의 자원을 공유하고, 성장전략을 일원화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한편,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통해 주민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함(안 제2조).

나. 통합특별시를 정부의 직할로 두고, 통합특별시에 시·군·자치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인격과 관할을 설정함(안 제3조).

다. 통합특별시에 부시장을 두고,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며, 그에 따른 조문체계 정비(안 제123조).

라.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위·조직·행정·재정 등 특례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9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520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5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와”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를 “시는 통합특별시 또는 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로, “광역시·도”를 “통합특별시·광역시·도”로, “특별시와”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을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6조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통합

특별시·광역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로, “2명이나 3명”을 “복수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2명이나 3명”을 “복수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3명”을 “3명 이상”으로 한다.

2.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4명으로 한다.

제196조 중 “특별시장이나”를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9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제19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을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광역시”를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u>특별시</u> ,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u>특별시와</u>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 -----. 1. <u>특별시, 통합특별시</u> ----- ----- 2. (현행과 같음) ② ----- ----- <u>특별시, 통합특별시</u> <u>별시</u> 및----- ----- ----- -----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생략) ② <u>특별시</u> ,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u>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u> 광역시의 관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현행과 같음) ② <u>특별시, 통합특별시</u> ----- ----- ----- ----- <u>시는 통합특별시 또는 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u> ----- ----- <u>통합특별시·광역시·도</u> ----- ----- <u>특별시, 통합특별시</u> 및-----

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
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
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
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
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④·⑤ (생 략)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
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
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
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
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

-----.

-----.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

-----.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

-----특별시
장·통합특별시·광역시장·

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8조(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

도지사-----.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장-----

-----.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

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생략)

<신설>

2. 3. (생략)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

1. (현행과 같음)

2.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4명으로 한다.

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

-----제1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에 따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

-----복수로-----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부지
사를 3명 두는 시·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
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
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97조(특례의 인정) ①·② (생
략)
<신 설>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
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

---복수로---

---3명 이상---

-----.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
장, 통합특별시장,-----

-----.

제197조(특례의 인정)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
해서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
를 둘 수 있다.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

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2. (생략)

③ (생략)

-----.

②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